

정 관

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



사단법인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장애인 상담 · 교육 · 재활 ·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정문제, 인권문제, 가정폭력,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, 폭력예방은 물론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복지를 증진하며 장애인의 행복권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.(2016.2.4. 개정)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“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” 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 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법인의 주된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둔다.

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지회, 연구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①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.

1. 장애인 성폭력 · 가정폭력 피해자 법적 · 의료적 · 심리적 상담지원
2.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, 주 · 단기 보호시설 사업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
3. 장애인 폭력 피해자 및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
4. 장애인 성폭력 · 가정폭력 예방 및 홍보활동
5. 장애인 전문 상담원 양성, 전문 봉사자 발굴 및 제반 교육지원 사업
6.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인권운동 및 인식개선사업
7. 장애인 정책 연구 활동
8. 장애인가정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
9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수탁사업
10.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②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수혜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
-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장애인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-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후원회원은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찬동하며 후원성금 및 후원물품으로서 지원하는 자로 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동된 권리를 가진다.
 1. 정회원은 법인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.
 2. 후원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.
- ② 제 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.
 1. 법인의 정관,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 2. 약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
 3. 법인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
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징계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(탈퇴서)으로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1.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2.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3.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
 4.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

5.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
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원

제8조(임원 및 정수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회장포함)
3. 감사 2인

제9조(임원의 선임)

- ① 법인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원된 임원을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
- ③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

-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그러나 그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임원의 선임제한) 본 법인 임원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를 임원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.

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, 총회·이사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,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

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1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

1. 법령,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
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 3. 직무태만 ·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때
 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- ② 임원해임의 경우 4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다.

제14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5조(고문 및 자문위원) 법인은 운영에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 회장 및 고문, 자문 위원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할 수 있다.

제 4 장 총 회

제16조(총회의 구성)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 한다.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.

제17조(총회의 소집)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1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2.총회구성원 1/5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

3.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③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2016.2.4. 개정)
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정관개정에 관한 사항
- 2.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(2016.2.4. 개정)
- 3.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
- 4.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
- 5.해산에 관한 사항
- 6.재산처분에 관한 사항
- 7.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- 8.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
- 9.기타 필요한 중요사항

제19조(총회의 의결)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의결 제척 사유)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2.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는 자신과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21조(총회 의사록)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의사록은 본 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22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이 법인에 회장(대표권 있는 이사)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(2016.2.4. 개정)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3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사업계획·실적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- 3.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- 4.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5.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6.(2016.2.4.삭제)
- 7.법인이 설치할 시설의 장의 임면의 관한 사항
- 8.법인이 설치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9.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10.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(2016.2.4. 개정)
- 11.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(2016.2.4. 개정)
- 12.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24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(2016.2.4. 개정)
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.

제25조(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26조(의결제척사유)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.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제27조(회의록의 작성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본 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수 익 사 업

제28조(수익사업) ①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따로 임명할 수 있다.(2016.2.4. 개정)

제29조(수익의 처분 및 관리)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전액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무조직 및 운영

제29조(사무국)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.

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-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명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0조(긴급사안에 대한 사후 승인) 그 사안이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 사항일 경우 선 집행하고 후 승인을 받아야한다.(2016.2.4. 개정)

제8장 자산 및 회계

제31조(재산)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. 기본재산은 출연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증한 동산,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.

② 보통재산은 전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2조(기금 및 재원)

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(2016.2.4. 개정)

제33조(자산의 관리) ①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,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4조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(2016.2.4. 개정)

제35조(사업계획 및 예산) 법인은 매 회계연도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사업실적 및 결산)

①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각종 기부금의 경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

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(2016.2.4. 개정)

제37조(회계잉여금 처리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 9 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38조 (정관변경 및 해산) ①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9조(잔여재산의 귀속)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(2016.2.4. 개정)

제 10 장 보 칙

제40조 (준용규정)

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41조 (운영규정 등)

①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.

② 본회 및 지부에 속한 부설기관의 위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내규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창립총회 의결 사항에 관한 경과 규정)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6.2.4. 제정)

2008. 7. 11. 제정

2016. 2. 4. 개정



사단법인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

